

동아시아의 상생을 위한 탈북이주민 인권의 재해석*

: 중국의 전통 『회남자』를 중심으로

엄 태 완**

목 차

I. 머리말	IV. 탈북이주민 인권의 정당화 : 『회남자』를 통해
II. 인권의 정의	V. 맺음말
III. 동아시아에서의 탈북이주민 인권	

[초록]

동아시아의 탈북이주민은 ‘문젯거리’ 혹은 ‘수동적 희생자’로 의미부여 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삶에 대해 서구적 인권 대 동아시아의 주권으로 이분된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탈북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탈북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담론에 참여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 글은 탈북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중국의 전통 『회남자』에 내재된 생명 존엄, 상대적 가치의 존중 사상이 상충됨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 속에 인권 이념이 폭넓게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탈북이주민의 삶이란 주제로 동아시아의 전통과 서구 이념이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면 이들이 단지 동아시아의 문젯거리가 아니라 상생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 동아시아, 탈북이주민, 인권, 상생, 회남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B00435)”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tweom@kyungnam.ac.kr

I. 머리말

탈북이주민¹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을 경유하여 남한이나 세계 각국²으로 이주하는 상황은 동아시아 내의 독특하고 빠른 인구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이동은 문화이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불러일으킨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도 인구이동은 큰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前兆)이었다. 독일 사람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통일이 되기까지 매년 대략적으로 2-3만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1-2천명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1990년 10월에 독일이 통일되기 직전인 1989년에 39만 명, 1990년에는 약 4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였다(김영탁, 1997 : 110). 이와 같이 민족 또는 국가 간의 인구이동은 그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탈북이주민의 역동적 이동현상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한국, 중국³, 일본⁴ 등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역외국인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도

1.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는데, 남한에서는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공식 용어인 ‘새터민’, 그리고 ‘북한이주민’으로도 불리며, 일반인들은 ‘탈북자’로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 등의 제 3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난민(refugees)으로 지칭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는 북한주민으로 인정하고 대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제 3국, 그리고 남한에 거주하거나 이동 중인 모든 북한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탈북이주민’으로 명명하였으며, 북한을 탈출하여 전 세계로 이동 혹은 정착 중인 사람을 일컫는다.
2.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은 탈북난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전 세계 23개국에 정착해 있으며 그 숫자는 2,000명 이상이며 그 외에 다양한 형태로 체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2010년 2월 18일자).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2006년 이후 총 93명, 캐나다 2000년 이후 77명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으며, 독일 1,390명, 영국 1,000여명, 기타 유럽연합국 체류자 10-40명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탈북난민은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예멘 등에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현재 탈북이주민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으로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탈북이주민 규모는 1990년대 중반이후(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였을 때 최대 30-4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06년 좋은벗들은 탈북이주민 10만 명, 탈북난민이 출산한 어린이들이 5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였으며,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 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이주민의 규모가 10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다(박영호 외, 2010; 371-372). 가장 최근의 연구(Chang, et al., 2008)에서는 중국 내 탈북이주민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여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후 탈북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발표되고 있지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구(특히 미국)와 일본, 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탈북이주민에 대해 인권(human rights) 중심으로 대화를 갖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시도에 대해 중국은 국가 주권의 문제라며 냉소적 혹은 적대적인 의심으로만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의 탈북이주민들은 아직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개인이거나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이주민들의 인권 보편성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현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인권의 이름으로 유린되는 국가 주권의 문제가 엄존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가 주권의 언설에 억눌려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과 개인의 인권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조경란, 2005 : 94) 때문이다. 탈북이주민을 문젯거리로 보는 동서양의 정치적 접근이나 고전적 의미의 보편적 인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공허하다. 또한 탈북이주민의 인권 담론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과 인권 유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논의를 지속한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상극(相戩)적 대립과 그 속에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탈북이주민만 존재할 뿐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탈북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일차적으로 탈북이주민에 대해 문젯거리로 보는 관점에서 역동적 변화의 매개체로 바라보아야 한다. 탈북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담론은 인권 유린과 주권으로 대별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극적 논쟁의 지속은 탈북이주민들에게 실제적, 정치적인 맥락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여전히 고통 받는 일상 속의 수동적 희생물로 간주되기 쉽다.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상호교류적인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제기한 인권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는 논의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않으며, 2009년에는 북한을 탈출하는 신규 탈북이주민은 크게 감소하여 대부분의 신규 탈북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박영호 외, 2010 : 372).

4. 일본은 북한 적십자사와의 협정아래 1959년에서 1984년 사이에 9만 3천 340명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주로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노동자로 일본에 강제 이주된 한국인들이며, 일본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의 일본인도 6천 731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에는 이렇게 이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200여명 정도의 탈북이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돌아가 재정착하고 있다(박영호 외, 2009 : 46).

사람과 생명체 및 모든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하여 자신의 권리와 똑 같이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들과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감'을 말하는 '상생(相生)'(이근식, 2005 : 100)에 주목하게 된다. 북한에서 시작된 탈북이주민들의 이동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문젯거리로만 상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유목민(nomad)으로서의 가능성도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상극적 존재로만 의미부여 되고 있는 탈북이주민들이 서구의 인권과 동아시아 전통의 만남을 이끄는 매개체라고 가정한다. 서구 관점으로 본 탈북이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이 내포하고 있는 사상과 상충됨을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이주민에 대한 인권 담론이 동서의 대립이 아닌, 인간, 생명 중심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구의 인권과 동아시아 전통의 만남을 위해 중국의 고전 『회남자』에 내재된 인간 존엄 및 상대적 가치의 존중과 인권의 관련성을 탐색할 것이다.

II. 인권의 정의

인권(human rights)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다.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Reichert, 2011 : 2). 인권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국적, 경제력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유되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하며, 이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과정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실질적 상황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Arat, 1991 : 3). 인권의 철학적 가치는 생명, 자유·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평등·차별하지 않음, 정의, 연대책임, 사회적 책임, 점진적 변화·평화·비폭력,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

5. '아시아적 가치'는 리관유가 싱가포르의 비민주적 사회 및 정치 질서를 정당화하고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자국내의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개념이다(장은주, 2000 : 158).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옹호하는 입장(함재봉, 1999)과 문제 삼고 있는 입장(이승환, 1998)으로 나뉘어져 논쟁 중이다. 여기서는 이런 논쟁적 차원에서 담론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이념의 타당성과 교감하는 아시아(보다 좁게는 중국)의 전통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설명할 수 있다(이혜원 역, 2005 : 44-56).

인권 이념은 1948년 12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현안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보편적 이념이자 공동의 가치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6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발의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⁶에 대해 각 국가들이 비준 절차를 거쳐 1976년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부터이다. 1976년 ‘국제인권규약’의 인권 개념은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이동윤, 2009 : 174). 보다 세부적으로 아이프(Ife, 2010)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일상적 삶을 사는 개인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인권을 사회권(social rights), 경제권(economic rights), 시민권(civil/political rights), 문화권(cultural rights),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 영성권(spiritual rights), 생존권(survival rights)으로 구분하였다(Ife, 2010 : 157- 199).

이러한 권리 구분은 인권의 3세대(three generations)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Ife, 2008 : 30-33). 인권 1세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로써 세계인권선언 제2조부터 제21조에 걸쳐 규정된 권리이며, 이를 ‘소극적 권리’로 지칭한다. 이 권리들은 부여, 획득,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방어되어야 할 성격의 권리들이며,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방을 보장하도록 고안된 권리이다.⁷ 인권 2세대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로써 세계인권선언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된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적극적 권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경제·문화생활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 인권 3세대는 집합적 권리(collective rights)로

6.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사회권규약 A)’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자유권규약 B)’으로 구분된다.

7. 1세대 인권은 투표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공정한 재판과 법 앞의 평등, 공민권과 사생활의 보장, 자기표현의 권리, 종교의 자유, 공무담임의 권리, 시민생활과 사회생활에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공공안전의 권리, 차별(종교적·인종적·성적 차별 등)받지 않을 권리, 합법적 사업을 보호받을 권리, 협박·희롱·고문·강요 등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Reichert, 2011 : 20).

8. 2세대 권리는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로서 취업할 권리,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보호를 받을 권리, 노년기에 존엄있게 대우받을 권리, 적당한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Reichert, 2011 : 20).

써 전체 인류를 위한 합법적이며 보편적 욕구인 평화·발전에 대한 권리와 파괴로부터 보호된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⁹ 집합적 권리는 20세기에 들어서야 실질적 인권으로 인식되었다.

국제사회는 1세대와 2세대 인권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으로 국제인권 규범을 규율하는 중요한 행동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후에 이들 선언과 규약들은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 불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받게 되었다(이동운, 2009 : 175). 하지만 보편주의에 기초하는 인권도 지역적 상황, 특히 동아시아 수준에서는 인권 대 주권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인권의 발전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서구지역에도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도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주민과 동성애자, 그리고 특정 종교신자 등의 소수 집단들은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취급을 받고 있다. 특히 이주민 문제는 주권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로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홍익표, 2005 : 328-331). 마찬가지로 탈북이주민의 인권 갈등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탈북이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인권의 침해로 규정하는 반면에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주권의 문제, 혹은 문화상대주의 차원으로 간주하는 것에 기인한다.

Ⅲ. 동아시아에서의 탈북이주민 인권

동아시아 차원에서 바라 본 인권에 관한 거대 담론들(장은주, 2000; 조경란, 2005; 함재봉, 1999)의 논의를 살펴보면, 정치적인 보편적 인권 일변도의 주장이나 아시아적 가치, 유가적 인권 담론만을 고집할 수도 없다는 규범적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탈북이주민의 경우 인권의 거대 담론에 참여하거나 동서양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로 인권 담론

9. 3세대 인권은 경제개발에 대한 권리, 세계무역과 경제성장으로 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결집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에서 살 권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에서 숨 쉴 권리,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자연’을 경험할 권리 등과 같은 환경권을 포함한다. 3세대 인권을 조약과 협정으로 성문하는 것은 초보적 수준이며,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제도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3세대 인권은 기존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인권 규정에 도전하여 소위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를 옹호하는 것이기도 하다(Ife, 2008, 33).

을 전개하는 것은 이들의 실제적 삶, 그리고 동아시아의 상생에도 이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동아시아의 탈북이주민 인권을 보장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 이슈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국제레짐(regime)¹⁰을 통해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다층적 행위자(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범체계 및 실행절차’를 말한다.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차원의 인권레짐이 확대되고 있다(서창록, 2005 : 56-57).

그러나 인권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지역별 인권레짐은 인권 후진국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는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민감성과 정치적 저항 때문에 레짐의 효과를 높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김근식, 2011 : 192). 인권레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가치나 의제를 지지하는 국내 이익집단 혹은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인권레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인권영역에서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으로 얻게 될 가시적 이익보다 국내정치적 비용이 더 큰 중국과 북한의 존재가 무엇보다 인권레짐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근식, 2011 : 193). 동아시아 인권레짐의 형성은 그로 인한 국가이익이 아직 크지 않고 패권국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공유된 문화도 상대적으로 낮고 다자대화의 경험도 일천하다는 점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이성우, 2008 : 77-82). 동아시아에서의 인권레짐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고 다만 유엔차원의 인권협력과 NGO 중심의 인권협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탈북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동아시아 차원의 인권레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탈북이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레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의 특수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장은주(2000)는 인권의 보편성은 서구적 형이상학이 확보한, 그래서 단지 특

10.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의 기대하는 바가 수렴되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Krasner 1991, 2)’로 정의된다.

수한 문화적 맥락에서만 설득력을 갖는 ‘이성’이라는 외적 권위에 의해 보장된 어떤 실제적 규범의 보편성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인권의 보편성은 보편주의적 지향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다. 인권의 이념에 포함된 규범적 요청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무제약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보편성을 담고 있다(장은주, 2000 : 170).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 상황의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탈북이주민들도 중국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은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중국인들에게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수준에서 탈북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권 이념이 서구에만 존재하는 관점인지, 아니면 동아시아에도 이미 형성되어 역사적 전통 속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구와 동아시아의 인권에 관한 이분법적 대립 속에 탈북이주민의 인간 존중에 대한 논의가 희생당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은주(2000)는 인권의 이념이 세계 각 문화단위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차이를 무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그러한 문화적 정체성 주장의 보호와 문화적 차이의 포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은 미리부터 전제된 어떤 주어진 보편성일 수 없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들을 관통하는 문화 간의 대화라는 매개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보편성일 수밖에 없다. 인권의 이념이 서구에서 최초로 발생되고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우연성이 과장되어 서구중심적인 관점 속에서 ‘서구/비서구’의 문화주의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는지 모른다(장은주, 2000 : 176).

문화적, 역사적 특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서구에서 생산된 인권 개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에 도전하기보다 토착적 인권 전통을 발굴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이 인권의 가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상환, 2007 : 332)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 불교의 비폭력 원칙이라는 과정을 통해 인권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인권의 ‘국지적 정당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전통적 문화 위에 놓여 진다면 인권이 장기적으로 보호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정연식·이상환 : 2000). 이와 같은 가능성을 중국의 전통적 문화에서 발견한다면 인권의 국지적 정당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의 인권도 장기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IV. 탈북이주민 인권의 정당화 : 『회남자』를 통해

1. 『회남자』에서 발견한 인권의 국지적 정당화

동아시아에서는 집단 내지 공동체의 권리가 사회정의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강조됨에 따라 집단권리가 개인의 권리를 압도하고 대체해 왔다. 동아시아에서 개인적 권리는 이기적이며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인권관은 유교 특유의 정치사상으로 귀결된다. 즉 유교는 개개인의 욕구를 긍정하고 그것들을 사회, 정치 생활의 기본원칙으로 삼기보다는 공동체 사회 내에서 지켜야 되는 가치와 덕목을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추구한다(정영선, 1999 : 238). 유교사상에서는 결코 절대적인 인권,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권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개인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함재봉, 1996 : 117).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중국의 중화주의(中華主義)¹¹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학자들은 서구/동아시아, 근대/탈근대, 식민/탈식민을 대립시킨 가운데 민족문화의 주체적 지위를 회복하는 중화성의 회복을 추구한다(이육연, 2004 : 14-15). 중국은 유교를 근 백년 만에 대대적으로 부흥시키면서 중화패권주의를 강화하려고 한다.¹²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다. 중국은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입을 선언적으로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인권대화에 응하고 다자적 국제기구에 참여하였다.¹³ 또 다른 차원에서는 선 개발론 등 국제사

11. 모든 중심주의는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평화적이고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힘이 충분치 않으면 대내적 단속으로 만족하지만, 힘이 강해지면 어떤 폭압적 수단을 쓰더라도 대외적으로 자기 논리를 관철시키려 드는 것이 중화주의와 같은 중심주의의 공통된 특징이다 (김성환, 2010 : 263)

12. 그러나 중화주의에 대한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희교, 2000).

회에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인권을 서구적 가치의 결과물로 여기고 중국의 문화적 가치와 주권의 존중을 주장하고 있다(윤영덕, 2008 : 202-205).

중국의 중화주의는 유교와 공생해왔다. 공자 이래로 유교는 진리의 순결성과 절대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것은 비진리라는 이분법을 제공하는 원리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전통은 결코 순수하지도 단일하지도 않다. 유교적 ‘도덕공동체’는 더 이상 오늘날의 ‘도덕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의 ‘권리/법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장은주, 2000 : 175). 중국의 전통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가능성들이 서로 긴장하며 공존하고 있다. 즉 중국 역사상 유교의 절대주의와 보편주의만을 추종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유교가 국교로 등극했던 한무제의 시기에 회남왕 유안을 위시한 학자들이 공동집필한 『회남자』에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 문화의 상대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교 경학이 절대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집단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안, 『회남자』는 지배적인 집단 의식을 해체하는 집단 지성의 놀라운 개방성과 활력을 보여주었다(김성환, 2010 : 280).

『회남자』는 회남왕 유안(劉安, B.C. 179-122)과 그 식객(食客)들이 편집하여 지은 책이다. 현재 판본은 모두 21편이지만 원래 『회남자』는 내편(內篇) 21편, 외편(外篇) 33편이 있었으나, 외편 33편은 당시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회남자』의 각 편은 한 사람의 저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분담하였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비논리적인 측면이 많다. 『회남자』는 그보다 100년 전에 이루어진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체제를 본떠 저술했다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여씨춘추가 유가 사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회남자는 도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때의 도가 사상 중에는 이미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있었으며, 여기에 유가(儒家)나 묵가(墨家), 명가(名家), 그리고 법가(法家)의 이론도 뒤섞여 있었다(신창호, 2005 : 67). 『회남자』에는 어느 한 사상에 치중하기보다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골고루 활용하여 국가 경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주의적 발상이 담겨 있다.¹⁴

13.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인권정책의 비판과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서 1997년 국제인권 A규약(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하였고, 1998년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가입하였다(윤영덕, 2008 : 210).

『회남자』는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살피는 실용주의적 사상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단일한 중심주의가 아니라 개별 인간(백성)의 삶을 중시하는, 인권의 이념에 내재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존중하는 사상이 담겨있다. 먼저 『회남자』의 범론훈에서 보면 ‘백성은 곤경에 직면하면 보다 나은 수단을 찾아내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관습이라도(때에 안맞으면) 따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선왕의 법도라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남상호, 2003 : 114). 여기에서 백성은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선왕의 법도라도 바꿀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백성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의 강조이다. 『회남자』는 ‘모든 하천은 근원이 달라도 모두 바다로 흘러가고, 제자백가의 학설은 서로 달라도 모두 세상 다스리는 데 힘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남상호, 2003 : 115). 이는 인권의 철학적 가치인 평등, 연대책임, 사회적 연대를 말하는 것이며,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인한 인간존엄성의 제한을 경고하는 것이다.

『회남자』에서는 도가 사상 중에 음양오행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생을 중심으로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오행론의 근간을 이루는 변화의 기본 법칙과 작용은 상생과 상극에서 찾을 수 있다. 상생에는 밀거름이 되는 희생과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상극에는 처음부터 성장을 못하도록 막는 극제(剋制)와 일정한 것만 허락하고 더 이상의 진행은 막는 억제(抑制)의 뜻이 들어 있다. 상생과 상극은 돕는 작용과 막는 작용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통하여 만물의 변화를 주도한다. 즉 상생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 상극이 없으면 발전을 이룰 수 없으니, 상생은 길하고 상극은 흉한 것이 아니다. 상극은 상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발전으로 유도하고, 상생은 상극의 고통을 한 단계 성숙한 성장으로 이끈다. 상생과 상극은 변화를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김성태, 2010 : 224-225).

따라서 탈북이주민/중국인, 서구의 인권/중국의 주권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14. 현존하는 『회남자』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류하면, 먼저 원도훈(原道訓)은 도가적 본체론(本體論)이고, 숙진훈(淑真訓), 남명훈(覽冥訓), 정신훈(精神訓), 무칭훈(繆稱訓)은 유도가적 수양론이며, 천문훈(天文訓), 지형훈(地形訓), 시칙훈(時則訓)은 음양오행가적 생명환경론이고, 본경훈(本經訓), 주술훈(主術訓), 제속훈(濟俗訓), 범론훈(犯論訓), 수무훈(脩務訓), 태족훈(泰族訓)은 명가적 토론이고, 요약(要略)은 20편 전체를 요약한 총론이다(남상호, 2003 : 113).

도 있지만 오히려에 따르면 이러한 상극은 상생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주체임을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탈북이주민의 문제, 거기에 연결된 인권의 이슈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걸림돌이 아니라 상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면서 동아시아인 전체를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국지적 정당화는 중국의 전통인 『회남자』와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탈북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상황을 『회남자』를 통해 재해석할 것이다.

2.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본 『회남자』에 내재된 인권 이념

탈북이주민 인권침해 사례는 본 연구자의 2008년과 2010년의 심층 인터뷰 내용¹⁵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에서의 탈북이주민 인권침해 내용을 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회남자』에 내재된 인권 사상과의 상충적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의 인권에 대한 국지적 정당화를 시도할 것이다.

1세대 인권 관점인 소극적 권리의 시민권(civil rights)은 일상생활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기본적인 안전이 보장되며 차별이나 배제를 받지 않는 구조와 절차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Ife, 2010 : 172). 탈북이주민의 경우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존엄한 인간으로서 처우 받고,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 받으면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이다. 중국에서의 시민권은 주권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인권과 주권의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난민 문제나 대량학살 등과 같이 개별 국가들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15. 사례분석 대상자는 11명이며, 2008년 연구참여자 3명(2월부터 3월 말까지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 2010년 연구참여자 8명(6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다. 2008년 사례분석 대상자는 사회복지관 및 관련단체의 담당자들을 통하여 소개받았다. 그리고 그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에 동의한 탈북이주민들을 면담하였다. 탈북이주민 1명 당 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2회 면담을 수행하였다. 2010년 사례분석 대상자는 북한이탈주민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소개받아 면담에 동의한 8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면담시간은 개인에 따라 90분에서 180분이었고, 면담 횟수는 1-2회이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면담 즉시 전사하였다.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제사회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단지 일부 강대국들의 국익을 대변해 줄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박정원 역, 2002). 중국의 탈북이주민들이 일상생활의 평등, 사회구조적 차별과 배제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시민권의 획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언설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인간 삶의 정당하고 필수적인 기본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며,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사례들이다.

“중국에서는 제 이름도 없이 살았잖아요. 이름 없이 그저 숨어사는게... 그저 똥개처럼 굴러가는 인생이었는데...”(48세 여성, 1999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그저 참고 사는게 인간 치욕이라는 치욕 다 들으면서 참고... 그 변소칸 똥도 다 치우면서 살았는데 (중략). 중국에서 시어머니 풍으로 대소변 5년 동안 내손으로 받고... 남편 술 먹고 수시로 때리고... 친척들이 애도 내가 못살 것 같아서 이모할머니가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참고, 내가 국적 가지는 날이 있겠지. 그저 참고, 참고 살은게 11년 그렇게 지냈어요.”(38세 여성, 함경북도, 1997년 탈북, 중국 11년 거주)

“신분증만 있으면 안전만 보장되면, 중국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100% 있는다 (중략). 중국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천대 받고 멸시 받으면서 살았는데... 일해서 일했지만, 식당에 일했지만 제가 그런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37세 남성, 1998년 탈북, 중국 10년 거주)

“자꾸 잡아서 넘기고 하니까... 감옥생활을 하제. 심지어 또 다 죽이지. 처형하지 (중략). 중국에 아무리 오래 있었다 해도 국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숨어살아야...”(59세 남성, 1999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팔린 집에서 도망 나와서 잡혀가지고 북에 이송되는 거죠. 집에서 또 살기가 어렵죠. 아, 정말 세 번씩 잡혀 나갈 때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어(국경근처에만 있어서) 계속 다시 브로커한테 팔려가고...”(45세 여성, 1999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중국에서 애가 생겼는데... 그 때부터 제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들은 2명까지 낳을수 있지만, 저는 탈북자라... 제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애는 학교도 못가고...”(55세 남성, 1999년 탈북, 중국 10년 거주)

“중국에서 사는게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이렇게... 브로커에 계속 팔려다니고...
암만 팔려 다녀도 서로 의지할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45세 여성, 1997년 탈북, 중국
5년 거주)

“제가 잡힌거는 개한테 잡혔는데(중략). 우리 3명은 못일어나니까 나뭇가지에 한명
씩 눕혀가지고 쪽쪽 이렇게 끌고 내려 갔어요. 짐승도 아마 사냥해서 잡으면 그
렇게 안가져 갈거예요.”(47세 남성, 2000년 탈북, 중국 3년 거주)

“중국 한쪽 애를 낳았는데, 내가 도망 갈까봐. 애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난 죽을 때
까지 애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40세 여성, 1994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2세대 인권 관점인 적극적 권리의 경제권(economic rights)은 도구적인 것으로서 다른 권
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의 관계 속에서 중요성을 갖는다(Ife,
2010 : 165). 경제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 안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
는 전략과 지배적인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개발하는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이주민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제권을 유지할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국의 탈북이주민들의 일차적 이주 목적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권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social rights)은 단순한 관계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며 교육, 보건, 주거, 레크리에
이션, 배우자의 선택, 가족생활, 일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 소득보장 등을 보호하고 실
현하는 사회정책의 영역이다(Ife, 2010 : 157). 이러한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공적 역할,
시장에 의한 사적 역할, NGO 등의 제3섹터에 의한 역할로 달성된다고 본다.¹⁶ 탈북이
주민의 경우에 국가, 시장, 제3섹터에 의한 사회권의 획득은 불가능하거나 미미한 실
정이다. 중국은 탈북이주민을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무국적자가 아닌 북한주민으로
규정하여 국제사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박호성, 2004 : 3).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인권의 수용 여부를 떠나 탈북이주민들에 대한 사회권 자체를 논의할 필
요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이주민들은 교육, 보건, 주거, 소득보장에 대해 권리
로서 주장할 수 없으며, 최소한의 인간관계와 가족생활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16. 사회권에 대한 세부적 논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만 탈북이주민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사회권을 다룬다.

경제권과 사회권의 보장은 생존권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된다. 생존권(survival rights)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 음식, 주거, 보건 등에 대한 권리이다(Ife, 2010 : 195). 음식은 거시적으로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기아로 인한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인권의 위기로 다루어져야 한다. 탈북이주민의 경우에 주거는 피난처와도 관련이 있다. 피난처는 인간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중요한 인권 이슈이다. 의료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빈국이든지 부국이든지 적절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생존에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난민이나 이주민의 경우에 의료는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 사례와 같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는 기본적인 경제권, 사회권, 생존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조선에서는 애들이 도와달라고 전화오지, 집에는 돈이 없지, 내 절로(스스로) 70세 인 아바이하고 내 56때 같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절대로 내게 통장을 주지 않고 겨우 살게 얼마씩만 줍니다.”(48세 여성, 1999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근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은 진짜 중국에 있을 때도 사는게 진짜...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언제 잡혀나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그저 진짜 막... 그렇게 살았어요. 훗날도 안 보고 살았는데...”(37세 남성, 1998년 탈북, 중국 10년 거주)

“조선 사람 중국에 넘어가서 탄광에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조선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그저 하루에 탄광에서 일해도 10원씩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50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 사람이니까...”(59세 남성, 1999년 탈북, 중국 9년 거주)

“내가 살기 위해 일흔네살 먹은 영감 만나서 내 같이 살았는데... 그저 그 돈 모으는 재미에 살아 간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상대하지 않고... 아파도 그저 참고... 그저 숨어 살았습니다”(45세 여성, 1999년 탈북, 중국 10년 거주)

“일해도 북한에서 온 것 알면 돈 아니 줍니다. 사람 약점 잡아서 공안에 신고하고. 만약 약박에 남는 게 없으니까(중략). 이 새끼들이... 조선족들 애미 애비도 몰라요. 이 새끼들이 제 배밖에 모르는 새끼들이라고... 고발 하니까 돈 주잖아요. 그 재미

있어서 고발한단 말입니다. 조선족들이라는 게 몹쓸 새끼들입니다(중략).”(55세 남성, 1999년 탈북, 중국 10년 거주)

“극도의 극도의... 진짜 최고 극도지 그런건... 가서 아를 일으켜 줄 시간도 없이 막 뛰면서(중략) 그래 열매도 먹고... 막 어떤데 가게 되면... 막... 진짜 멧돼지 털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막... 긴털이... 그런 것 보면 머리칼 서고 막 이리 무섭지... 근데 사람이 내가 칼날위에 섰자나요. 내 숨통이 왔다갔다...”(45세 여성, 1997년 탈북, 중국 5년 거주)

“차라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런데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같이 살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우리가 잘못되면 애를 어떻게 할까 친척하나 없잖아요. 중국에서 정말 혈혈단신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허덕허덕거리면서 산거지요”(47세 남성, 2000년 탈북, 중국 3년 거주)

중국에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한 대우는 역사적 전통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전통 『회남자』에서는 인간중심을 넘어 자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았다. 『회남자』에서는 천지만물이 하나의 커다란 생명이고, 온 우주가 한 몸이라고 하였다. 인간도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연 안의 존재’이다. 즉 인간이 자연을 제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대자연이 인간을 낳고 양육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남자』에서 우주는 천차만별인 사물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작용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커다란 생명이라고 본다(이석명, 2010 : 7-11).

천지만물이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우주적 기운의 장(場)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회남자』의 사상에서 본다면 탈북이주민의 차별과 배제는 온당하지 않다. 이것은 중국인과의 비교되는 차별이든지 모든 생명(인간을 포함한)을 존중하여 ‘너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라는 상생의 관점에 위배되든지 간에 바람직하지 않다. 『회남자』의 ‘제속훈’에 보면 인간중심주의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치기준으로 세상 모든 것을 재단하는 절대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성도 촉구한다. ‘... 어리석은 자에게도 장점이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부족함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만물에는 귀하거나 천함이 없다. 그 귀한 바에 따라 귀히 여기면, 사물에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천한 바에 따라 천히 여기면, 사물은 천하지 않은 것이 없다’(김성환, 2007 : 139-140). 탈북이주민은 시대적, 상황적 조건에 의해 중국인들에게 『회남자』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천한 자

로 분류될 수 있지만 『회남자』는 이러한 특정가치 기준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회남자』의 사상을 존중한다면 탈북이주민의 인간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권에 대해 주권이나 문화상대주의에 의한 ‘아시아적 가치’로 대응할 수만은 없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의 경제권, 사회권, 생존권을 개별적으로 논의하려면 복잡 미묘한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생명을 가진 존엄한 존재인 인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로 논의를 좁혀 갈 수 있다. 이렇게 인간, 즉 생명 전체로 논의 확대하면 탈북이주민들이 중국인들과 차별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의 시대적 상황과 『회남자』의 전제와는 사뭇 다르다. 『회남자』에서 세계는 살아 있는 생물체이다. 즉 『회남자』에서 살아 있는 모든 생물, 그리고 물과 불과 흙과 금속과 돌과 바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보편적인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회남자』의 저자들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천지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우주적 질서라고 파악했다. 음양은 천지만물의 운동에서 조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우주만물의 운동변화를 설명하는 오행은 사물을 대상화하거나 고립시키지 않는 사고방식이다.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 나무와 다른 사물과의 관계부터 살핀다. 그러므로 ‘흐름(行)’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행에는 일방에서 다른 일방을 견제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를 상극(相剋)이라고 한다. 또 일방에서 다른 일방을 살리는 흐름이 있는데 이를 상생(相生)이라고 한다. 이처럼 음양오행은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분리된 고립적 대상으로 분별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물과의 다양한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이론체계다(김성환, 2007 : 121). 이를 통해 본다면 중국인과 세계인, 중국인과 탈북이주민, 중국인과 중국인, 탈북이주민과 탈북이주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결된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소한의 경제권의 박탈, 기본적인 인간관계와 가족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의 유지까지도 어렵게 하는 실태는 『회남자』에 내재된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회남자』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인 모든 사물들을 서로 서로 살리면서, 분리되고 고립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와 인권의 세부 영역인 경제권, 사회권, 생존권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회남자』에서는 다른 가치체계의 존재나 의미는 폄하하고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원리주의자들을 경계한다. 이는 나와 다른 상대를 지배해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집단의 욕망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회남자』는 ‘백가를 물리치고 오직 유교만 숭상해야 한다(罷黜百家, 獨尊儒術)’라는 시절에 개방적인 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였다. 『회남자』는 시대에 따라 힘써야 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달라야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적절한 방법이다. 즉 시대의 상황 변화에 따라 사용 도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남상호, 2003 : 138). 『회남자』에 내재된 상대적 가치와 생명 존중 사상으로 비추어 본다면 서구의 인권 이념을 새로운 인간 존엄의 도구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남자』를 통해 탈북이주민과 같이 다른 문화,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소위 ‘이방인’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역사적, 학술적으로 항상 단일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현재 주변인이고 이방인으로 자리매김되며 인간 존엄성의 상실 상황에 있는 중국의 탈북이주민들은 『회남자』에 내재된 인권 사상을 재발견시키는 존재들이다. 이를 통해 또 하나의 동아시아 전통이 인권 이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남자』를 통해 인권의 의도를 가진 단순 서구의 산물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류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V. 맺음말

동아시아에서는 유교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숭배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권위·억압·파벌·배타·독단의 문화가 자라나기도 했다. 서구중심주의를 대체하는 중화주의와 같이 자의식과 자기중심성에 갇힌 관념으로는 동아시아의 상생을 위한 평화와 공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서구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즉 서구국가들은 인권 맥락에서 주권국가의 국내문제에 개입하면서 특수한 이익의 관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은 서구적 맥락에서 형성된 개념이란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은 모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각국에서의 인권신장이 대외정책의 목표임을 공개적으로 표방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예외주의(exceptionalism) 물을 바탕으로 냉전시대에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를 일삼는 제3세계의 많은 권위주의국가의 정부들을 대상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이 지원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상환, 2001 : 66). 미국이 세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인권탄압적인 정부하의 국민들에 대한 동정심, 인권탄압적인 정부 지도자에 대한 분노, 인권탄압은 미국의 건국정신에 위배된다는 신념,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동서 이념투쟁에서 인권문제의 외교적 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Fraser, 1979 : 178, 이상환, 2001 : 67에서 재인용). 미국의 타국에 대한 인권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인 성격도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국가들 내부도 1990년대 탈냉전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대규모의 난민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중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이주민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떼어놓고 토착민들과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리나 인위적 기준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묵인하기도 하였다.¹⁷ 유럽의 이주민 인권정책은 통합적 인권정책¹⁸과 선별적 인권정책¹⁹

17. 영국의 경우 1905년 외국인법(Aliens Act)으로 이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영국 국적법(British Nationality Act)은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시민권을 폐지하도록 변경되었다. 1980년대 이후로 영국에서의 상황과 유사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합법적인 이주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Hayes, 2005 : 183).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은 필요로 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 건강, 사회보장, 주택 등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전쟁, 박해, 기아와 세계적 위기의 결과로 인해 망명하는 난민들은 영국으로의 입국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난민들에 대한 접근도 전적으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비용부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난민들은 가난하며 부담되고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1999년 이민·망명법(Immigration and Asylum Act)은 이들에게 가족과 장애 수당을 없애고 바우처를 확대하고 강제적 분산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난민들은 주택을 강제적으로 배치 받았으며 최저생활이하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2년의 국적·이민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은 더욱 민족주의를 고취하고 난민들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난민들은 건강, 교육,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Hayes, 2005 : 185).

18. 특정한 사회계층과 사회집단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이주민의 경우 분리, 차별, 불평등의 상태를 극복하게 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향한다.

19. 지역과 국가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소수집단의 인권을 배려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별적 인권정책은 주로 철저하게 규제된 이주민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이주자들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지만 유입국의 시민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 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유입국 사회와의 교류도 불평등하고 소원한 관계를 이루는 국가들에서 주로 채택된다. 유럽에서는 스위스가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전형적인 국가이며 독일도 어느 정도는 선별적 정책요소를 지니고 있다. 통합적 인권정책은 시민적 지위를 거주지와 연관시키며 시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수용하고 있다(홍익표, 2005 : 332). 유럽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서유럽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부터 난민들이 대규모로 유입하였을 때에 극우파와 극우정당들의 이주민에 대한 강경책들이 정당화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강압력을 행사하여 국제이주를 억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주민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이들에게 제한적인 권리만 허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흐름이 정치경제의 주도적 행위자였던 국가의 능력과 자율성을 약화시켰지만 이주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서구의 이중적, 모순적인 인권정책과 달리 동양에서는 서구의 인권을 넘어서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이 유구한 역사만큼 폭넓게 존재한다. 예컨대 간디의 아힘사(ahimsa)²⁰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간디는 모든 생명을 범하지 말 것을 역설한 생명존중 사상가이다. 간디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세균, 채소, 해충, 뱀 등 다른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 고통스러워했다(허우성 역, 2004 : 360). 간디는 현실에서 아힘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폭력이나 살생의 최소화가 생명존중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은 불교의 생명윤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불교의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연기(緣起)이다. 이 세상 만물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수한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깨우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교윤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지 않고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0. BC 3000년 경 고대 산스크리트의 베다 전통에서 아힘사 교의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불살생’, 즉 ‘모든 살아 있는 존재에게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의(계율)는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전통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다(Pluhar, 1998 : 163, 박찬규, 2012 : 57에서 재인용).

집착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찬구(2011)는 불교윤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생명의 본래적 가치와 평등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간의 잘못된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인권은 서구적 문화에서 파생되었다는 논리를 넘어 동양적인 사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회남자』를 통해 중국의 전통 속에 인권의 이념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인권 담론은 서구의 음모적 의도나 서구 자체의 모순²¹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의 방편으로 동아시아의 전통 속에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 존중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구체적 수단으로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이주민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회남자』에 내재된 생명 존중 사상과 상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탈북이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위기 사례로 인해 인권 이념을 포함하는 중국의 전통을 불러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탈북이주민들이 단지 동아시아 불협화음의 상극적 존재로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유목민으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 참고문헌 ■

- 간디, 라가반 이에르 편(2004). 『진리와 비폭력(하)』(허우성 역). 소명출판사.
- 김근식(2011).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 인권개선의 시사점”, 『한국정치연구』, 제20권 1호. 187-207.
- 김성태(2010). 『음양오행』. 텍스트북스.
- 김성환(2007). 『회남자』. 살림출판사.

21.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인권정책은 선별적 차원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1985년 처음 서명되고 1990년에 이행협정으로 구체화된 쉥겐협정(Schengen agreement)이 대표적이다.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의 시민들은 역내 국경을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역외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선진적인 인권정책이 행해진다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인권과 관련된 이중 기준의 대내외정책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홍익표, 2005 : 337).

- 김성환(2010). “華夷너머의 相生·中華 관념이 해체된 동아시아는 가능한가?”, 『중국학논집』, 28집. 253-287.
- 김영탁(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올아카데미.
- 김희교(2000).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상상된’ 중국”, 『역사비평』, 제53집. 17-36.
- 남상호(2003). “회남자의 도사일통의 방법”, 『공자학』, 제10집. 111-145.
- 박영호·이금순·김수암·홍우택(2009). 『북한인권-국제사회동향과 북한의 대응』. 통일연구원.
- 박영호·김수암·이금순·홍우택(201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박찬구(2011). “동물권의 문제와 상생의 생명윤리”, 『윤리연구』, 제83집. 53-76.
- 박호성(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국제정치연구』, 제7권 2호. 1-24.
- 서창록(2005). “북한 인권문제와 동아시아 인권 거버넌스 : 국제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2호. 55-87.
- 신창호(2005). “동양적 인생관과 수양의 교육적 차원·회남자·정신훈을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제21권 2호. 61-78.
- 윤영덕(200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권관과 인권정책”,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2호. 195-225.
- 이근식(2005). “자유와 상생 : 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직업윤리의 모색”, 『기업윤리연구』, 10권. 87-120.
- 이동윤(2009).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 2호. 171-200.
- 이상환(2001).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 코소보와 동티모르의 사례 비교”, 『국제정치연구』, 제4집. 63-79.
- 이상환(2007). “국제적 반부패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찰 : 보편성과 상대성의 충돌과 조화”, 『국제정치연구』, 제10권 1호. 323-347.
- 이석명(2010). “회남자에 나타난 천인합일의 자연관”, 『쌀·삶·문명 연구』, 제4집. 5-23.
- 이성우(2008).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접근 : 동북아에서의 ‘인간안보레짐’의 형성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육연(2004). “개혁개방 이후 전통 문화의 재평가와 변용-전통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현대문학』, 제31집. 1-28.
- 이승환(1998).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열린 지성』, 제4집. 12-27.
- 장은주(2000). “문화적 차이와 인권-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철학연구』, 제49집. 155-178.

- 잭 도넬리(2002). 『인권과 국제정치』(박정원 역). 오름.
- 정영선(1999). “동아시아의 인권과 국가 경제 성장 논리-인권 논의의 ‘아시아적 가치’ 비판을 중심으로”, 『정치·정보 연구』, 제2권 2호. 229-251.
- 정영식·이상환(2000). “미국의 인권외교정책 : 중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 『21세기 국제관계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박영사.
- 조경란(2005). “동아시아 인권 담론의 의미와 한계 및 재구축의 조건-한국철학계의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1집. 93-113.
- 홍익표(2005). “배제로의 수렴? 유럽의 인권정책과 이주민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9권 2호. 317-343.
- 함재봉(1999).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철학연구』, 제44집. 17-33.
- UN Centre for Human Rights(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이혜원 역). 학지사.
-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2월 18일자.
- Arat, Z. F.(1991).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Developing Countries*. Boulder and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 Chang, Y., Haggard, S., & Noland, M.(2008).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Hayes, D.(2005). “Social Work with Asylum Seekers and Others Subject to Immigration Control”, in *Social Work Futures*, edited by Robert Adams, Lena Dominelli & Malcolm Payne. N. Y. : Palgrave Macmillan.
- Ife, J.(2008).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fe, J.(2010). *Human Rights from Below-Achieving rights through community development*. N. 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asner, A.(1995).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 Reichert, E.(2011). *Social Work and Human Rights*. N. Y. : Columbia University Press.

■ Abstract ■

Reinterpret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for the Win-Win of the East Asia
: focused on a Chinese tradition, 『Huani-nam Tzu』

TAE-WAN EOM**

The North Korean Refugees of the East Asia have been regarded as 'trouble' or 'passive victims'. Along with it, the concepts of western human right and East Asian sovereignty conflict together on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Especially, China where the largest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s dwelling doesn't even try to participate in any discourse on issue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In such geographical,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 this study regarded the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nomad of East Asian Win-Win Strategy.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against the dignity of human life and the thought of respecting relative value inherent in Chinese tradition of 「Huani-nam Tzu」. From 「Huani-nam Tzu」, I could learn that the human rights are not merely fruit of the West with intention but historic fruit of mankind that respects universal humanity. I could confirm that the thoughts of respect for all lives over humankind are included in the 「Huani-nam Tzu」 and other Asian tradition. And I suggest to include 'human rights' as a concrete means to realize this.

Key Words : East Asia,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Win-Win Strategy,
「Huani-nam Tzu」

■ 논문투고 : 2013년 8월 15일 논문심사 : 2013년 9월 13일-9월 30일 게재확정 : 2013년 10월 7일

*** KYUNGNAM UNIVERSITY